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수행 업무 추가〉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36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3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30.

(3) 회 부 일 : 2025. 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기기 관련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정보제공, 보조기기 대여·수리 등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이 보조기기의 대여·수리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인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정보 접근성이나 지역사회 내 교류 기회 제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장애인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u>8.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u>
<u><신설></u>	<u>9.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u>
8. (생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라 함)에서는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각 ‘중앙보조기기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중앙보조기기센터는 국가 차원의 보조기기 정책 개발·연구, 전문인력 양성, 정보관리 및 국제협력 등 전국 단위의 종합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함.
-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지역 내 보조기기 상담·평가·대여·수리, 전시·체험 및 교육·홍보 등 이용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연계 서비스 수행 등을 수행함.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수행 업무>

구분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역보조기기센터
수행업무	•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보조기기 관련 국제협력 •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법적근거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3조제1항 각호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제1항 각호

주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

- 현재 중앙보조기기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보조기기센터는 각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 1: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사업 개요).

<연도별 보조기기센터 설치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9년	합계
중앙보조기기센터	1개소 (서울)	-	-	-	-	-	-	-	1개소
지역보조기기센터	-	2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6개소	16개소
		대전·대구	부산·광주	경기도	충북	경남·인천	전북·제주	충남·강원·충청·전남·경북·울산	

주 1):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자체 재원으로 4개 권역별(동남, 동북, 서남, 서북)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운영 중임.
자료: 「2025 보조기기센터 사업안내 지침」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지역 내 장애인의 전반적인 사회참여와 정보 접근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2024년 보조기기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지역 보조기기센터가 보완하거나 강화해야 할 서비스로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제품 정보 제공’(42.7%)과 ‘지역사회 내 사업 홍보’(19.5%)

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 보조기기 이용자의 관련 정보 접근에 대한 욕구는 높은 것으로 보임.¹⁾

□ 다만, 지역보조기기센터가 보조기기 외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 일반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은 이미 지역사회 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 전달체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중복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역보조기기센터에는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분야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어, 일반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내를 담당하기에는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²⁾

□ 한편, 개정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은 현행법상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는 장애인 및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보조기기의 이해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 중앙보조기기센터. (2024). 보조기기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2)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역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같은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담 콜센터,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해 공적·민간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기 종류·사용법, 대여·수리·맞춤 제작·개조 등 각 센터별 지원서비스를 안내하며,

박람회, 지역 행사 부스, 소식지·SNS 등을 통해 보조기기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보조기기 사용자(장애인등) 간 교류·협력 및 보조기기 정보제공 외 장애인등에 대한 일반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업무는 「장애인보조기기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 범위보다 상당히 폭넓은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력·장소·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편,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는 현행법상 규정된 업무에 따라 보조기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보조기기 사용자(장애인등) 간 교류·협력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

나.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국비 지원 16개 시·도) 의견수렴 결과, 세종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제외한 모든 센터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세종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는 인력 충원을 전제로 한 찬성 의견을 제시함.

- 반대 의견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개정안에서 신설한 업무는 이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다른 전달체계에서 수행 중으로, 지역센터가 추가로 제공할 필요성이 낮음. ② 보조기기 분야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센터의 기존 업무 범위를 벗어남. ③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업무를 추가하면 기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사업 개요>

☐ 중앙보조기기센터

- (운영주체) 국립재활원에서 직접 운영(09년~)
- (근거법령)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3조(중앙보조기기센터)
- (예산) '25년 10억 8,700만원(국비)
- (조직 및 인력) 센터장* 1, 사무관 1, 2팀(사례관리팀, 품질관리팀) 12명
*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겸직
- (주요사업) ▲보조기기 정책 지원(연구, 세미나 개최 등), ▲지역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 ▲전문인력 교육·연수, ▲보조기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보조기기 품질 기준 연구, ▲전시체험장 운영 등

☐ 지역보조기기센터

- (운영주체) 16개 시·도(서울은 자체 운영)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병원, 대학, 단체 등)
- (근거법령)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 (예산) '25년 2,145백만원(국비, 보조율 50%)
- (조직 및 인력) 센터장 1, 전문인력(보조공학사 등) 5명*
* 센터별 인건비 5명 국비 지원

< 지역보조기기센터 주요사업 >

1. 교부 평가	• 보조기기 교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부 적합성 평가
2. 상담 및 정보제공	•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 및 각종 보조기기 지원 사업 정보 제공 ※ 보조기기센터 상담 창구 운영 1670-5529
3. 교육 및 사후관리	• 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발간 • 보조기기 교부 후 사후관리 실시
4. 맞춤형 개조·제작	•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 직접 제작하거나, 시중 제품을 개조하여 불편함 없이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5. 체험 및 대여	• 다양한 보조기기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 일정 기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도록 대여 서비스 제공

<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 현황 >

2025년 8월 기준

연	센터명	위탁운영기관	센터 소재지	설립연도	비고
1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푸르메재단	서울 강동구	2008	서울 자체운영
2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서울 노원구	2014	서울 자체운영
3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서울 강서구	2015	서울 자체운영
4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푸르메재단	서울 마포구	2018	서울 자체운영
5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부산 연제구	2011	국고보조
6	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	대구대학교	대구 남구	2010	국고보조
7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노들담복지관	인천 계양구	2014	국고보조
8	광주광역시보조기기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광주 북구	2011	국고보조
9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대전 중구	2010	국고보조
10	울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 남구	2019	국고보조
11	세종시보조기기센터	세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종시	2019	국고보조
12	경기도북부보조기기센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경기 양주시	2012	국고보조
13	강원도보조기기센터	강원도재활병원	강원 춘천시	2019	국고보조
14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천주교회유지재단	충북 청주시	2013	국고보조
15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	나사렛대학교	충남 천안시	2019	국고보조
16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전주예수병원	전북 전주시	2015	국고보조
17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순천제일대학교	전남 순천시	2019	국고보조
18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대구대학교	경북 경산시	2019	국고보조
19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경남 창원시	2014	국고보조
20	제주도보조기기센터	사회복지법인삼다	제주 제주시	2015	국고보조

자료: 보건복지부